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2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민병덕·신장식·이해식

김한규 · 김남희 · 이수진

박희승 • 김성환 • 김종민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은 보호받아야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상자산의 권리 추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의 권리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가상자산의 권리 추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명부
	에 기재된 자는 해당 가상자산
	에 대하여 권리를 적법하게 가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